

의안번호	2213891
의 퇴 인	송석준 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 계 번호	25F5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44조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금액을 환급 - 환급세액은 법인세의 20% 한도 - 미공제금액의 이월공제 미적용
2	안 제144조의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대한 권리 양도 허용 - 양도 가능한 환급세액은 법인세의 20% 한도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4조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4조의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및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를 신설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
- 국가전략기술*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
 - ※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
 - 환급형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까지 지급함

[표 1]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 비교

(단위: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반도체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30~40	40~50	
	중견기업 ²⁾	8~20	20~35	30~45	
	대기업	최대 2	20~30	30~40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10	12	25	30
	중견기업 ²⁾	5~7.5	6~9	15~20	20~25
	대기업	1	3	15	20

주: 1) 표의 공제율은 당기 R&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

2)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을 포함한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요하나, 자료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표 3] 기술별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9,713	6,164	2,682
통합투자세액공제	14,699	223	59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와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